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u>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u> ②.....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u> 2. <u>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3. <u>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부칙	<u>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u> ②.....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u> 2. (삭 제) 3. (삭 제)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1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2000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가. 개정이유

-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및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총수 : 15인 이상 25인 이내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부구청장)
 - 위원 : 구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임기 : 2년(연임 가능)

【위원회 기능】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 개정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운영 사항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로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구청장의 부의사항 자문을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토록 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확대시킨 것은 좀더 사안을 신중히 처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위원회의 구성중 구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또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2/3이상 두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민간분야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소위원회의 운영중 기능별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은 내용을 좀더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의결사항도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 것은 회의가 좀더 활성화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년월일 : 2000. 11. 2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및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총수 : 15인 이상 25인 이내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부구청장)
 - 위원 : 구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임기 : 2년(연임 가능)

【위원회 기능】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개정(안) : 불임.

불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2.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3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의회의 의원
2. 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⑨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또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소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개최시 2인 이하의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2월 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2월 9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7차 위원회(2000년 12월 11일) 상정
제9차 위원회(2000년 12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지매입

(단위 : 천원)

구 분	위 치	면 적 (㎡)	소 유 자	매 입 비	비 고
계		4,058(1,228평)		5,279,120	2000. 공시지가
신길3동	252-11외 1	886 (268평)	김연평외2	1,916,800	
신길6동	3203외 1	3,172 (960평)	홍성길	3,362,320	